

그란츠 리버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7.25.(목)	2024.08.07.(수)	2024.08.08.(목)	2024.08.09.(금)	2024.08.16.(금)	2024.08.17.(토)~2024.08.19.(월)	2024.08.27.(화)~2024.08.29.(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1533-7677)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 단위세대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미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하셔야 함을 필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시 선사공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 7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단위세대의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당계약시(3일간) 예만 추가선택품목의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한 점을 청약 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계약기간(3일간) 이후에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신청/계약이 불가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p>■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p> <p>※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이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p> <p>※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p> <p>■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p> <p>■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급유형</th> <th>당첨자 선정</th> <th>예비입주자 선정</th> <th>동호수 결정</th> </tr> </thead> <tbody> <tr> <td>특별공급</td> <td>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td> <td>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td> <td rowspan="2">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td> </tr> <tr> <td>일반공급</td> <td>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td> <td>(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td> </tr> </tbody> </table>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p>-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p> <p>-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p> <p>-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p> <p>-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p> <p>-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p>■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p> <p>■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lanzlif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p>■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p>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2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정당계약)
일 정	08월 07일(수)	08월 08일(목)	08월 09일(금)	08월 16일(금)	08월 17일(토) ~ 8월 19일(월)	08월 27(화) ~ 08월 29일(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 자격확인서류 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건수 과밀 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기간과 정당계약자 서류접수일자와 동일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정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각각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참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하여 기재)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8409호(2024.07.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42층 2개동 공동주택 407세대 中 일반분양 327세대, 임대 80세대
[특별공급 138세대(기관추천 27세대, 다자녀가구 27세대, 신혼부부 52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241	01	036.9919	36	36.9919	17.6394	54.6313	31.6383	86.2696	6.8516	12	1	-	2	-	1	4	8	1
		02	044.8835A	44A	44.8835	20.0884	64.9719	38.3877	103.3596	8.3133	4	-	-	-	-	-	-	4	-
		03	044.9889B	44B	44.9889	19.7120	64.7009	38.4780	103.1789	8.3329	4	-	-	-	-	-	-	4	1
		04	059.9759A	59A	59.9759	25.7299	85.7058	51.2960	137.0018	11.1088	68	6	6	12	2	6	32	36	2
		05	059.8256B	59B	59.8256	26.5497	86.3753	51.1674	137.5427	11.0809	56	5	6	10	1	5	27	29	2
		06	059.9800C	59C	59.9800	26.0192	85.9992	51.2994	137.2986	11.1095	38	3	3	6	1	3	16	22	1
		07	059.8964D	59D	59.8964	25.4146	85.3110	51.2279	136.5389	11.0941	27	2	2	4	-	2	10	17	1
		08	084.9994A	84A	84.9994	36.6075	121.6069	72.6979	194.3048	15.7437	60	6	6	10	1	5	28	32	2
				84A1	84.9994	36.6075	121.6069	72.6979	194.3048	15.7437		-	-	-	-	-	-	-	-
		09	084.9869B	84B	84.9869	36.1322	121.1191	72.6872	193.8063	15.7414	46	4	4	8	1	4	21	25	2
				84B1	84.9869	36.1322	121.1191	72.6872	193.8063	15.7414		-	-	-	-	-	-	-	-
		10	104.4333	104	104.4333	43.8681	148.3014	89.3192	237.6206	19.3432	7	-	-	-	-	-	-	7	-
		11	108.8719	108	108.8719	47.5387	156.4106	93.1155	249.5261	20.1654	2	-	-	-	-	-	-	2	-
		12	113.3591	113	113.3591	51.3231	164.6822	96.9534	261.6356	20.9965	2	-	-	-	-	-	-	2	-
		13	180.9176P	180P	180.9176	79.3652	260.2828	154.7386	415.0214	33.5304	1	-	-	-	-	-	-	1	-
합 계											327	27	27	52	6	26	138	189	1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비 대지지분 산출 기준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현

※ 대지지분 면적오차는 180P 타입에 산입하여 보정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36.9919	044.8835A	044.9889B	059.9759A	059.8256B	059.9800C	059.8964D	084.9994A	084.9869B	104.4333	108.8719	113.3591	180.9176P
약식표기(타입)	36	44A	44B	59A	59B	59C	59D	84A, 84A1	84B, 84B1	104	108	113	180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면적의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창호위치, 문개폐방향 등의 차이가 있으며, 약식표기한 해당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탑입 중 084.9994A는 평면구조가 상이하여 84A와 84A1으로 구분, 084.9869B는 84B와 84B1으로 구분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084.9994A, 084.9869B 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여 추첨시 무작위로 당첨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탑입 중 32층의 104 탑입은 그 외 104타입 6개 세대와 분양 면적은 동일하나 건물의 구조상 외부공간이 제공됨을 사전에 확인 바라며, 외부 동선을 위한 출입구가 추가 계획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탑입 중 24층의 113 탑입은 하부층으로 연결된 하향식피난구가 외부공간에 계획되어 있어 26층의 113타입 세대와 분양 면적은 동일하나 형태에 있어 상이함을 사전에 확인 바라며, 외부 동선을 위한 출입구가 추가 계획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	층 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20%)	2회(20%)	3회(20%)	
										계약시	'24.10.28	'24.12.26	'25.02.26
036.9919	36	101동 2호	4층	1	416,165,850	216,834,150	-	633,000,000	63,300,000	126,600,000	126,600,000	126,600,000	189,900,000
			7~9층	2	445,093,650	231,906,350	-	677,000,000	67,7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203,100,000
			10~14층	2	458,900,100	239,099,900	-	698,000,000	69,800,000	139,600,000	139,600,000	139,600,000	209,400,000
			15~29층	4	485,198,100	252,801,900	-	738,000,000	73,8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221,400,000
			30~38층	3	499,662,000	260,338,000	-	760,000,000	76,000,000	152,000,000	152,000,000	152,000,000	228,000,000
044.8835A	44A	101동 4호	15~29층	2	508,208,850	264,791,150	-	773,000,000	77,300,000	154,600,000	154,600,000	154,600,000	231,900,000
			30~38층	2	516,098,250	268,901,750	-	785,000,000	78,500,000	157,000,000	157,000,000	157,000,000	235,500,000
044.9889B	44B	102동 3호	4층	1	550,943,100	287,056,900	-	838,000,000	83,800,000	167,600,000	167,600,000	167,600,000	251,400,000
			15~25층	3	591,047,550	307,952,450	-	899,000,000	89,900,000	179,800,000	179,800,000	179,800,000	269,700,000
059.9759A	59A	101동 1호	4~6층	3	896,761,800	467,238,200	-	1,364,000,000	136,400,000	272,800,000	272,800,000	272,800,000	409,200,000
			7~9층	3	910,568,250	474,431,750	-	1,385,000,000	138,5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415,500,000
			10~14층	5	953,302,500	496,697,500	-	1,450,000,000	145,000,000	290,000,000	290,000,000	290,000,000	435,000,000
			15~29층	14	971,711,100	506,288,900	-	1,478,000,000	147,800,000	295,600,000	295,600,000	295,600,000	443,400,000
			30~38층	9	985,517,550	513,482,450	-	1,499,000,000	149,900,000	299,800,000	299,800,000	299,800,000	449,700,000
		101동 5호	4~6층	3	896,761,800	467,238,200	-	1,364,000,000	136,400,000	272,800,000	272,800,000	272,800,000	409,200,000
			7~9층	3	910,568,250	474,431,750	-	1,385,000,000	138,5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415,500,000
			10~14층	5	939,496,050	489,503,950	-	1,429,000,000	142,900,000	285,800,000	285,800,000	285,800,000	428,700,000
			15~29층	14	953,302,500	496,697,500	-	1,450,000,000	145,000,000	290,000,000	290,000,000	290,000,000	435,000,000
			30~38층	9	967,766,400	504,233,600	-	1,472,000,000	147,2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441,600,000
059.8256B	59B	101동 6호	4~6층	3	854,027,550	444,972,450	-	1,299,000,000	129,900,000	259,800,000	259,800,000	259,800,000	389,700,000
			7~9층	3	886,900,050	462,099,950	-	1,349,000,000	134,900,000	269,800,000	269,800,000	269,800,000	404,700,000
			10~14층	5	921,744,900	480,255,100	-	1,402,000,000	140,200,000	280,400,000	280,400,000	280,400,000	420,600,000
			15~29층	14	935,551,350	487,448,650	-	1,423,000,000	142,300,000	284,600,000	284,600,000	284,600,000	426,900,000
			30~32층	3	949,357,800	494,642,200	-	1,444,000,000	144,400,000	288,800,000	288,800,000	288,800,000	433,200,000
		101동 7호	4~6층	3	854,027,550	444,972,450	-	1,299,000,000	129,900,000	259,800,000	259,800,000	259,800,000	389,700,000
			7~9층	3	888,214,950	462,785,050	-	1,351,000,000	135,100,000	270,200,000	270,200,000	270,200,000	405,300,000
			10~14층	5	929,634,300	484,365,700	-	1,414,000,000	141,4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424,200,000
			15~29층	14	967,108,950	503,891,050	-	1,471,000,000	147,100,000	294,200,000	294,200,000	294,200,000	441,300,000
			30~32층	3	985,517,550	513,482,450	-	1,499,000,000	149,900,000	299,800,000	299,800,000	299,800,000	449,700,000
059.9800C	59C	101동 3호	4~6층	3	788,282,550	410,717,450	-	1,199,000,000	119,900,000	239,800,000	239,800,000	239,800,000	359,700,000
			7~9층	3	850,082,850	442,917,150	-	1,293,000,000	129,300,000	258,600,000	258,600,000	258,600,000	387,900,000
			10~14층	5	931,606,650	485,393,350	-	1,417,000,000	141,700,000	283,400,000	283,400,000	283,400,000	425,100,000
			15~29층	14	969,081,300	504,918,700	-	1,474,000,000	147,400,000	294,800,000	294,800,000	294,800,000	442,200,000
			30~42층	13	985,517,550	513,482,450	-	1,499,000,000	149,900,000	299,800,000	299,800,000	299,800,000	449,700,000
059.8964D	59D	102동 2호	4~6층	3	854,027,550	444,972,450	-	1,299,000,000	129,900,000	259,800,000	259,800,000	259,800,000	389,700,000
			7~9층	3	890,187,300	463,812,700	-	1,354,000,000	135,400,000	270,800,000	270,800,000	270,800,000	406,200

			102동 6호	4~6층	3	1,051,262,550	547,737,450	-	1,599,000,000	159,900,000	319,800,000	319,800,000	319,800,000	479,700,000
				7~9층	3	1,117,007,550	581,992,450	-	1,699,000,000	169,900,000	339,800,000	339,800,000	339,800,000	509,700,000
				10~14층	5	1,176,835,500	613,164,500	-	1,790,000,000	179,000,000	358,000,000	358,000,000	358,000,000	537,000,000
				15~29층	15	1,206,420,750	628,579,250	-	1,835,000,000	183,500,000	367,000,000	367,000,000	367,000,000	550,500,000
104.4333	104	102동 2호	32~38층	7	1,712,373,750	892,387,500	89,238,750	2,694,000,000	269,400,000	538,800,000	538,800,000	538,800,000	808,200,000	
108.8719	108	101동 6호	33~34층	2	1,805,810,625	941,081,250	94,108,125	2,841,000,000	284,100,000	568,200,000	568,200,000	568,200,000	852,300,000	
113.3591	113	102동 5호	24층, 26층	2	1,858,567,500	968,575,000	96,857,500	2,924,000,000	292,400,000	584,800,000	584,800,000	584,800,000	877,200,000	
180.9176P	180P	101동 6호	35층	1	3,178,125,000	1,656,250,000	165,625,000	5,000,000,000	5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500,0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은 최초 계약자 대상(전매 매수 계약자는 제외)으로 양양 더앤리조트 멤버쉽 혜택(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을 제공하고 더앤리조트 멤버쉽 혜택의 경우 계약세대의 전용면적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자세한 혜택내용은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입주민 대상의 컨시어지 서비스업체인 'SLP'와 운영협약하여 입주민 대상의 '비서 서비스'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비서 서비스'이외의 기타 컨시어지 서비스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세계푸드와 협약하여 단지 내 균생시설에 신세계푸드 조식서비스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조식서비스 비용은 입주민 중 조식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내 삼성스토어, 스타벅스 입점 계획은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과 입점예정 업체와의 입점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광고홍보물(홈페이지, 카탈로그, 온라인기사 등) 상에 표현된 "AI/IoT, 조식서비스, 피트니스/사우나/스크린골프 시설운영, SLP 컨시어지 서비스, AI Baggage로봇 배치"는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각 해당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협의 상황에 따라 운영개시일, 운영업체,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보도기사 등의 광고홍보물에 설명된 '발렛주차 서비스'는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 이 '발렛주차 서비스' 운영사와 별도 협약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 단지 내 균린생활시설의 전용 주차면을 활용하여 입주후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발렛주차 서비스' 비용은 본 단지 입주민 중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서비스는 시행위탁사와 운영사간의 약정 운영 기간 1년 이후 운영 종료될 수 있으며 약정 기간 이후의 서비스 운영 유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선시공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 단위세대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미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하셔야함을 필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동출입구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총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계약 전 주택전시관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각 동마다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36	59A	59B	59C	59D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1	7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	1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	1	1	4
	중소기업 근로자	-	1	1	-	1	-	3
	장애인	-	2	1	1	2	1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	3	3	2	1	3	14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	3	1	1	3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2	12	10	6	4	10	8	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1	1	-	1	1	6
생애최초 특별공급	1	6	5	3	2	5	4	26
합 계	4	32	27	16	10	28	21	13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²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m²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m²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에도 소형·저가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주택전시관)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며 각 특별공급 주택형별로 낙첨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신청자수가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p>※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p>(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7,004,510원~ 8,405,411원	8,248,468원~ 9,898,160원	8,775,072원~ 10,530,085원	9,563,283원~ 11,475,938원	10,351,494원~ 12,421,792원	11,139,705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4,040,114원	12,421,793원~ 15,301,251원	13,367,646원~ 16,562,38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p>※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9">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d> </tr> <tr> <td></td> <td></td> <td> 1인 가구 </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d> </tr> </tbody>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입주자모집공고일</td> <td style="width: 33%;">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d> <td style="width: 33%;">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d> </tr> <tr> <td>07.25.</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8인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 등록 증명서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²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m²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m²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p> <p>■ ②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m² 이하</td><td>40%</td><td>60%</td></tr> <tr> <td>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td><td>40%</td><td>60%</td></tr> <tr> <td>전용면적 85m² 초과</td><td>-</td><td>100%</td></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² 이하	40%	60%	전용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	40%	60%	전용면적 85m ²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² 이하	40%	60%																																																																																																																		
전용면적 60m ² 초과 85m ² 이하	40%	60%																																																																																																																		
전용면적 85m ² 초과	-	100%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 <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 <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 <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 <td>3명</td><td>20</td><td></td><td></td></tr> <tr> <td rowspan="11">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1">17</td><td rowspan="9">본인</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 <td rowspan="2">배우자</td><td>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td><td>0</td><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2</td></tr> <tr> <td>1년 미만</td><td>1</td><td>2년 이상</td><td>3</td></tr> </tbody></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4)출입국 사실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p>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3d3d3;">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td><td>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td></tr> </table>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인감증명 방식</th><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16.(금) ~ 2024.08.25.(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8.1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7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8.07(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
일반공급	1순위	2024.08.08(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8.09(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4.08.16.(금)	• 일시 - 2024.08.27.(화)~2024.08.29.(목) (10:00~17:00)
일반공급	1순위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	• 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2순위		

	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을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그란츠 리버파크' 홈페이지(www.glanzlife.co.kr)를 통해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08.17.(토) ~ 2024.08.19.(월), 3일간 10:00 ~ 17:00	• 당사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 예비입주자 동·호수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수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자격검증 제출 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발급사항 참고하여 '상세'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으로 대체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 방문 특별공급 청약 접수 시 제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 현장접수 가능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O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임신의 경우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주택전시관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자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임신증인의 경우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input type="radio"/>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직계비속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생애최초 자격 요건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전시관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자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전시관 비치] 임신의 경우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input type="radio"/>	가점제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전시관 비치]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대리인 구비 서류	<input type="radi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전시관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소명 자료	해당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 피해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제출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 증명원(원본)	①,② 세무서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 등록 증명원(원본)	① 국민연금공단/세무서 ② 세무서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 등록 증명원(원본)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행정복지센터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서(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25.)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전국구)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포함) ③ 행정복지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단독·공동주택 외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전국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종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재직증명서	① 건강보험공단 ②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사업자 등록 증명원(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촉(해촉)증명서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해당년도 포함) 제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③ 세무서 ④ 해당직장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해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일정 및 체결절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8.27.(화) ~ 08.29.(목) 10:00 ~ 17:00	당사 주택전시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동·호수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O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및 부적격 소명자료 일체(자격검증서류 제출자는 제외)	
	O	계약금 입금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입금증(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주택전시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도장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서명으로 대체)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계약체결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O	수입인지(인지세)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한함)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O	위임장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기준이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입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004-649386	(주)코람코자산신탁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흥길동(계약자) → '1010101흥길동' / 101동 1001호 흥길동(계약자) → '1011001흥길동')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점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2020.02.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발코니 확장, 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납부 기일 및 납부금에 대한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수분양자 3.5% 고정금리 부담, 3.5% 초과분은 시행위탁사 부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가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가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로 대출기관 알선할 예정이며,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위탁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사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시행위탁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주택전시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에서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036.9919	044.8835A	044.9889B	059.9759A	059.8256B	059.9800C	059.8964D	084.9994A	084.9869B	104.4333	108.8719	113.3591	180.9176P
약식표기	36	44A	44B	59A	59B	59C	59D	84A,84A1	84B,84B1	104	108	113	180P
발코니 확장 비용	12,200,000	-	16,4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20,900,000	22,900,000	22,900,000	27,700,000	33,000,000	29,000,000	55,000,000

■ 발코니 확장 비용 납부일정

주택형(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4.10.28.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4-679964	(주)코람코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함으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 발코니 미확장세대(44A)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현장 공정상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44A 타입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어, 비확장형으로만 공급함.)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44A 타입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어, 비확장형으로만 공급함.)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의 발코니에 선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등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샐리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바닥, 배면, 천장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창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는 환기배관, 가스배관, 배수배관 등의 일부 배관이 천장에 노출로 설치될 수 있으며, 특별한 마감이 없습니다.
-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에어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6	삼성	인피니트 AI	실내기 1대 / 실외기 1대	거실	3,270,000	프리미엄급 (공기청정기능, / UV기능) 홈네트워크 연결형 와이파이 장착형
		44A	삼성	인피니트 AI	실내기 2대 / 실외기 1대	거실 + 침실1	5,270,000	
		44B	삼성	인피니트 AI	실내기 2대 / 실외기 1대	거실 + 침실1	4,850,000	
			ALT2	인피니트 AI	실내기 3대 / 실외기 1대	거실 + 침실1 + 침실2	6,620,000	
빌트인냉장고	비스포크	36,44A,44B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Satin)		RF60DB9KA1AP	3,570,000	상품모델 및 도어판넬 색상 변경불가
인덕션	인덕션	36,44A,44B	삼성	삼성 인덕션		NZ63CB6506XW	1,030,000	
빨래건조대	빨래건조대	44A,44B		전동식빨래건조대		웰테크 맘이지(AL4000FS)	3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삼성 프리미엄 제품으로 제공하며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판매시 상세 제공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천장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해당금액은 상기 판매가격에서 제외되었음 (천장배관 기본제공 36타입 거실 / 44A타입 거실,침실1 / 44B타입은 거실,침실1,침실2에 설치됨)

▪ 불박이 가구(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선택	구성 및 상세내용	판매가격	비고
주방 수입주방패키지 + 욕실수전 특화	냉장고장	36	- 냉장고장	500,000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EUROMOBIL LAIN' 가구 + 상판 앤지니어드스톤+ 기본 수전 기본 설치 + 욕실수전류 아메리칸стан다드 기본 적용 *수입주방패키지 선택/미선택시 공통으로 냉장고장은 국산 '넥시스' 제품으로 기본 설치됨
		44A	- 냉장고장	530,000	
		44B	- 냉장고장	630,000	
	EUROMOBIL SEI+벽/상판(세라믹판넬)+인덕션(NZ63DB503CFT_블랙)+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욕실1+욕실2)):한스그로헤	59A	- EUROMOBIL SEI+벽/상판(세라믹판넬)+인덕션(NZ63DB503CFT_블랙)+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욕실1+욕실2)):한스그로헤	64,000,000	
		59B,59C	- EUROMOBIL SEI+벽/상판(세라믹판넬)+인덕션(NZ63DB503CFT_블랙)+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욕실1+욕실2)):한스그로헤	62,200,000	
		59D	- EUROMOBIL SEI+벽/상판(세라믹판넬)+인덕션(NZ63DB503CFT_블랙)+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욕실1+욕실2)):한스그로헤	63,900,000	
		84A	ALT1 EUROMOBIL SEI+세라믹패널(벽/상판)+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69,500,000	
		ALT2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 아일랜드 후드 +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76,300,000	
		84B	-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75,000,000	
		104	ALT1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66,350,000	
		ALT2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 아일랜드 후드 +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73,650,000	
		108	-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77,700,000	
		113	-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 : 한스그로헤	73,450,000	
		180P	- EUROMOBIL SEI + 세라믹패널(벽/상판)+ 고급수전 욕실수전류(세면기수전 + 샤워수전 + 욕조수전 (욕실1+욕실2+욕실3+욕실4)) : 한스그로헤	82,000,000	

■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 및 상세내용	판매가격	비고	
바닥 마감	강마루	36 강마루 플렉스 : 노르딕플렉스(W143)	거실/침실+주방	490,000	미선택시 강마루(W115) 기본 설치됨
		44A 강마루 플렉스 : 노르딕플렉스(W143)	거실+주방+침실	540,000	
		44B 강마루 플렉스 : 노르딕플렉스(W143)	거실+주방+침실	700,000	
거실벽 세라믹패널 (거실/복도)	세라믹패널 (거실/복도)	59A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CALACATTA MIX	거실1개면(아트월)+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6,130,000	
		59B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CALACATTA MIX	거실1개면(아트월)+복도(현관측)연장 + 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7,720,000	
		59C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CALACATTA MIX	거실1개면(아트월)+복도(현관측)연장 + 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8,130,000	
		59D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CALACATTA MIX	거실1개면(아트월)+식당벽 연장 + 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7,010,000	
		84A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식당벽 연장 + 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7,730,000	
		84B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복도(현관측)연장 + 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9,350,000	
		104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4,220,000	
		108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5,680,000	
		113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	4,150,000	
		180P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DUOMO NATURAL	거실1개면(아트월)+거실후면 + 복도1면(침실측)	5,340,000	

■ 욕실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 및 상세내용		판매가격	비고
욕실	수전도기류	36,44A,44B	· 도기류 : 아메리칸стан다드 · 수전류(세면기수전+샤워수전) : 아메리칸стан다드	도기류 : 아메리칸стан다드 수전류 : 아메리칸стан다드	1,900,000 미선택시 대림비엔코기본적용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4.10.28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004-642166	디엘이앤씨(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흥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흥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주택법」 제 54조 제 1항 제 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사업지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써,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 7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 4조 제 5항에서 언급되는 건축공정 40% 이후에 분양하는 사유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이후 변경 및 해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률 7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단위세대의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당계약시(3일간) 예만 추가선택품목의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한 점을 청약 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계약기간(3일간) 이후에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신청/계약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동 제조사의 동급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합병,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안내문 형식으로 고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모델, 상품구성 및 디자인,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36/44타입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59타입 이상은 기본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과는 별개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판매가격에는 해당금액이 차감 반영되었습니다.(천장배관 기본제공 36타입 거실 / 44A타입 거실, 침실1 / 44B타입은 거실, 침실1, 침실2에 설치됨)
- 거실에는 스텐드형 에어컨 설치용, 침실 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가 기본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주택전시관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제조사 및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 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준 위치에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는 84타입 이상에만 기본제공되며, 추가선택품목이 아님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오븐은 59타입 이상에만 아일랜드장 또는 주방가구 하부장에 기본제공되며, 옵션상품이 아님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하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및 추가선택으로 판매하는 36/44타입의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의 도어 패널 재질, 색상은 분양공고와 주택전시관 건립 세대에 전시된 범위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36/44타입 판매] 추가선택품목으로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를 선택하실 경우 냉장고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여야만 선택 가능하고, 상품의 구성 및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6/44타입 판매] 추가선택품목인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외에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해당 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 구성 및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타입이상 판매] 수입주방패키지 선택의 경우 공정 및 상품 구현을 위하여 상품 구성의 변경, 분리 설치는 불가합니다.
- 수입주방패키지 '유로모빌 SEI' 선택 시 84A/104타입의 경우에만 아일랜드형 인덕션 및 후드(FIN제품)이 적용 가능한 점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거실 세라믹 패널 옵션 선택 시 마감 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디자인월)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세라믹 패널 본 공사 시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등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벽체 및 상판)은 자재특성 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적체 및 상판)은 평형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디자인 선택은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 마감(주방상판) 옵션은 자재특성 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라믹 마감(주방상판) 옵션은 평형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디자인 선택은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패널 옵션 선택 시, 대형 세라믹패널의 적용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패널 옵션 선택 시, 자재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타입 이상의 단위세대의 경우 바닥마감재를 무상 옵션(스퀘어마루 or 광폭마루) 선택 가능(거실, 부장, 복도에 한함)하며, 바닥 마감재의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거실부 바닥 마감재는 자재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 광폭마루, 플렉스 스퀘어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및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주택전시관 건립호실에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 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무상옵션의 선택결과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전시관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5년 0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 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 (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 등으로 인한 문제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 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각 1개소), 커뮤니티센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제7조 제2항 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input type="radio"/>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input type="radio"/>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input type="radio"/>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input type="radio"/>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신동아전기감리(주)	주식회사 지여이앤씨
감리금액	1,899,433,100	554,430,000	63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分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주)코람코자산신탁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	DL이앤씨(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상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110111-6923571	110111-7736808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I	VII

■ 보증관련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4400 호	삼천육백일십오억육천육백팔십만원정 (₩ 361,566,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관리형토지신탁 고지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매도인 겸 수탁자인 (주)코람코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고, 매도인 겸 수탁자인 (주)코람코자산신탁은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주)코람코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코람코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본 계약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분양대금, 발코니확장공사비, 유상옵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손해배상 및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과 시공사 디엘이앤씨(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주)코람코자산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과 매도인 겸 수탁자 (주)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코람코자산신탁이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주)코람코자산신탁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5.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 단위세대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미확장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공급계약 체결시 공급금액 외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하셔야함을 필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북측 8호선(별내선)연장 사업은 2024년 개통 예정이며,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822호),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2023)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함.
사업지 동측 9호선연장 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이며,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23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본보고서]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함.
사업지 동측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2024년(남안성-남구리 구간) 개통 예정이며,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80호), 2023.04월 기획재정부 사업기간 연장변경 승인(2022년→2024년으로 연장)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표기한 내용으로 8호선(별내선)연장, 9호선연장,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업 모두 향후 사업주체 및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및 노선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당 아파트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현된 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표기의 출처는 ①.강동천호A1-1: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23-125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1388호②.강동천호A1-2: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23-12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20호③.C3특별계획구역:서울 제3830호 시보④.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구,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강동구청 재정비촉진사업현황을 참조하여 표기한 내용으로 시장여건 및 사업주체의 진행상황에 따라 개발계획 및 세부 세대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강동구 업무단지조성현황 계획(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 첨단업무단지)은 강동구청 업무단지조성현황을 참조하여 표기한 내용으로 사업기간, 근로자수, 입주기업 등의 세부 항목들은 사업주체 및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및 세부 항목의 내용들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현황으로 남측은 10m도로, 성내동이안(12층), 성내e편한세상(11층), 동측은 8m도로, C3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43층), 서측은 6m도로, 동남드림빌(11층), 리더스병원(5층), 성내프라자(5층), 북측은 천호대로가 위치함.
- 단지 서측에 있는 동남드림빌, 힐스테이트천호역센트리스, 북측에 있는 이안강동컴홈스테이1차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총 407세대중 공공임대 주택 80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단지내 균생시설, 구립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공공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대강당,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훈룸, 쓰레기 분리수거장, 경관조명,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루프탑가든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상1층 조경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 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 훈룸, 실외기실 등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이 함께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계단등 공용부 시설이 용도별로 배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실/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동출입구, 코어,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임대주택 또는 상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입주 후 진출입구(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조건에 의해 동남드림빌 방향 출구는 단지 내에서 좌회전 출차만 가능하며, 해당 출구의 차단기는 출차 전용이므로 단지 외부에서 단지 내부로 입차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진입 시에만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 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인도에 인접하여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빗물처리시설, 저수조, 기계실, 정화조, 지열기계실, 펌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지하 7층에는 공동주택용 및 균생용, 공공시설용 오수정화조 4개소가 설치되며, 오수정화조 배기덕트는 101동, 102동 옥상으로 배출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본 시공 시 일부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지상3층~지하7층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열교환실, 기계,전기실, 폐기물보관실, 쓰레기보관함실 등 건축면적 배분기준과 설비, 전기시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입주 후 주택관리업체와 균생, 공공시설 관리시설과 상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수경시설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생 및 공공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공개공지 및 도로 등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설치 후 강동구로 무상귀속) 건축한계선 설치 및 조성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강동구) : 차도 및 보도로 조성 / 동측 8m + 건축한계선 4~5.5m (지상권설정), 서측 6m + 건축한계선 4m (지상권설정), 남측 10m + 건축한계선 3m (지상권설정) 공개공지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강동구) ※ 단, 공개공지는 지상권의 설정과 관계없이 향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 당 아파트는 성내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로 본 단지에는 주거시설 이외에도 공공시설 및 균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외 연결통로, 기반시설등으로 단지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단지내의 공공청사는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포함)이 되었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대지경계와 건축한계선 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개공지는 강동구에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 사업지 지하 2층에서 천호역 공영주차장 지하1층과 연결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는(20년) 시행위탁사가 일괄 납부하고, 이후의 점용 사용료(매년)의 납부 및 향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개공지는 지상권의 설정과 관계없이 향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 점용료, 사용료 및 유지관리의 비용은 허가권자와 협의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차량 및 보행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대지지분이 균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 면적기준으로 배분되어 있고,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 재활용 분리수거장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주거, 근생, 공공시설이 같이 사용하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이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기타시설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기계, 소방, 전기, 토목등 배관, 배선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균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BF(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증에 따라 단지 인도 및 접근로등의 시설물 및 무장애 단차등이 설치 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및 지하 3층에 설치되며, 지하 3층 자전거보관소의 출입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 1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폐기물 보관소는 지하 3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및 지상1층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차단기는 미설치되며, 부출입구에는 출차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3층 주차장을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이 분할하여 사용하므로 상호 경계구역에 주차차단기 또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재활용 보관함 주거, 공공, 근생 이용시설이며, 지하3층에 설치 되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 3개소는 공공시설, 근생, 아파트에서 입주후 분배하여 RFID기기를 활용하여 분배하여 처리 바랍니다
- 지하3층에 설치되는 음식물 쓰레기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각각 3개소는 공공시설, 근생, 아파트에서 입주 후 분배하여 RFID기기를 활용하여 분배하여 처리 바랍니다
- 지하3층 폐기물 보관소는 공공시설, 근생 및 주거로 별도로 3개소 배치되어 있어 가구 및 집기류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 재활용/일반폐기물 보관소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소는 준공시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1동 지상 1층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3층 각 동출입구 주변에(동당 1개소) 무인택배보관함이 세대수의 약 15% 수준으로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높이 및 램프높이와 지하3층 통행로 중 택배차 진입구간은 2.7M 적용하였습니다. 단, 그 외 지하주차장의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통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입층(지하3층)을 제외한 지하4~7층 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2.3m입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수목시설등의 계획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삭제 또는 위치이동이 될수 있으며, 조경구간의 지장물 또는 시설물에 따라 계획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지상1층 지하 주차장 출입구 근처 하차장근처 승하차공간, 지상1층 리더스 병원측으로 어린이집, 지상3층 101동 주출입구 경로당과 지상1층 101동 MDF, 종합방재실, 비상발전기실, 지하2층 102동 3~6호 라인 공용부쪽에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관리사무소 등), 지하2층 작은선큰에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및 주민회의실/멀티룸, 지상3층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지상1,3층 어린이 놀이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시설물 작동시 소음, 매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상 군보법) 제 6조 1항에 의거 비행안전 제3구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보법에 대한 준수사항이 준수되어야 하며, 대지 상부로 항공기가 운행이 됨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발생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상정원(루프탑가든)의 출입은 각 동별 각 코어에서 해당동/해당라인의 세대만 접근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홍보시의 루프탑가든의 옥상구조물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수 있는 점 인지하시어 계약 바랍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54대(공동주택(지하):407대, 균린생활시설(지하):25대/공공시설(지하):22대_전기충전차 포함)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계획이 없으므로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여,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3층에 급속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시공 후,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연결통로등의 준공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승인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일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증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www.glanzlife.co.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시설, 별도의 분양시설인 균생시설은 공동주택과 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PIT 등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CS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주택법 제 60조 제 3항에 따라 주택전시관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을 이유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2024년 04월 23일 승인된 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59D, 84A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석재, 타일, 도배,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 사전점검 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위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 완료 후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및 공용부 등의 내부시설의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샤크, 실외기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 사무실을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s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 색온도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등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고정형/이동형 장식품, 가전제품 및 기기 등 모든 전시품 포함)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제공되는 미건립세대(59A, 59B, 59C, 84B, 104, 108, 113, 180P)의 VR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주택전시관의 VR은 주택전시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이므로 사이버주택전시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주택전시관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공급금액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기본 및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표기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의 크기 및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표현되는 스마트IOT 기능 흥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 내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마감재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홈페이지(www.glanzlif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전시관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모형은 단지 주변부 도로(인도) 및 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 조건으로 인해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어 있는 아일랜드형 인덕션 및 후드의 경우 '유로모빌 SEI' 옵션 선택시 84A, 104타입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점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및 시설물계획(설비, 전기, 소방, 토목) 등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용부 면적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전용부를 제외한 공간에서 인허가 조건 반영, 현장여건, 시공상 성능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당현장은 소방성능설계 및 친환경 주택인증,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증에 따라 공용부 평면면 및 단지 주변부 마감재 및 레벨, 시설물 계획등이 도서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옥상구조물,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인화검용 호이스트(리프트카)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됩니다.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대지경계선 내부의 건축한계선을 따라 설치되는 보도는 공공보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균생 및 공공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공개공지 및 도로 등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위탁사인 쭈디에이치프라퍼티원 설치 후 강동구로 무상귀속) 건축한계선 설치 및 조성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강동구) : 차도 및 보도로 조성 / 동측 8m + 건축한계선 4~5.5m (지상권설정), 서측 6m + 건축한계선 4m (지상권설정), 남측 10m + 건축한계선 3m (지상권설정) 공개공지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강동구) ※ 단, 공개공지는 지상권의 설정과 관계없이 향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최초 입주 이후 입주자 협의회에서 협의되어야 합니다.
- 당 아파트는 강동·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및 균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그 외 연결통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전협의 후 추첨 방법으로 선정된 것임을 확인바랍니다.
- 당현장은 강동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지구(성내5구역)으로 지자체 인허가 기준으로 건축물계획이 되어져 있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세대와 일반분양세대는 주거 공용부 및 시설물을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부, 외부 및 공용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균생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체,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로고,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공급 또는 입주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주변도로 및 시설물은 교통처리 계획도에 따라 계획되어져 있으며, 준공시 인허가 기관협의 및 현장여건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는 강동·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주상복합 건축물로 본 단지에는 주거시설 이외에도 공공시설 및 균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그 외 연결통로, 기반시설등으로인해 단지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입주민들의 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본 단지 입주시점에 공사일정에 따라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유의사항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헨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내부 및 외부도로는 소방차량 정차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어 이로 인해 식재 및 조경마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공공장소, 공개공지,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태양광패널, 옥상 배기구, 보안등 및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미술장식품의 미설치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 건축물미술작품 출연계획 협의에 따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훌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2024.04.23.)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구조물 또는 인도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자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엘리베이터 훌, 계단실은 건축계획에 따라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이 지상1층 1개소 설치되며, 주거, 공공, 균생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분리수거 시설입니다.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입면 커튼월, 태양광패널,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그외 기계, 전기실 및 소방피난 시설등은 실시공시 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및 지상1층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차단기는 미설치되며, 부출입구에는 출차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3층 주차장을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이 분할하여 사용하므로 상호 경계구역에 주차차단기 또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첨 후 반드시 주택전시관 모형도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저층부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루프탑가든, 옥상정원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자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패널,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광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주거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주동 지붕 및 계단실 외벽에 설치되며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훌,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훌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훌)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BF인증으로 인해 주출입구 단차로 우천시 빗물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관리사무소 등)으로 이동시 102동 3~6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하 2층 작은선큰에 면한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및 주민회의실/멀티룸은 선큰에 있는 외부계단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시설, 근생시설, 공공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3층에 4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접(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 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또는 가스정압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경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 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차단기로 분리되어 지하3층에 위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가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공개공지가 배치되어 이로 인하여 각 동 일부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101동 1층에 위치하며,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 3층 필로티 하부에 운동시설, 휴게시설이 배치되어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석재마감(층수 및 위치 상이함)과 장식용 커튼월, 태양광설비,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여건 등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별도 경비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차관제 및 CCTV관련 시스템은 지상1층 종합방재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정화조가 각각 설치되며, 오수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시 냄새 및 소음에 의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3층에 공공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 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2~지상3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입점하는 점포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냄새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지상3층 옥외에는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해당 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는 펌프실/열교환기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빗물저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펌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상수도 인입 압력부족에 따른 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전기료 등의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높이 및 램프높이와 지하3층 통행로 중 택배차 진입구간은 2.7M 적용하였습니다. 단, 그 외 지하주차장의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통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입층(지하3층)을 제외한 지하4~7층 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2.3m입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샤크,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7층 열병합시설은 균생, 공공시설(비주거) 친환경 인허가 기준으로 적용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 고층부 세대는 강풍시 옥탑 장식물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옥상 조경으로 인해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층 구조는 여건에 따라 철제 데크로 변경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옥탑층 천정 마감이 각 시공시 구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 Baggage로봇 배치될 예정으로 수량과 배정위치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후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와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의 준공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시에만 입주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단지의 지하2층과 천호공영주차장 지하1층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인허가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지연 혹은 입주시 해당시설의 이용 지연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준공 후 단지 내에 일부 공간을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등) 요구, 시설 이전/축소 등 을 계약자(또는 입주민)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 초등학생, 중학생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교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란츠 홈페이지, 주택전시관내 단지 위치도,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지도에 표기된 학교는 단지 주변에 위치한 학교를 표기한 것이며, 본 단지 입주민의 학생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 학교가 배정되니,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 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복도 등의 공용부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우수저류조, 정화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매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세대창고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이동식가구, 기구, 비품류 등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는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되며, 일부 실은 공기청정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선큰 구역에는 냉난방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시설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EHP가 적용됩니다. 지열기계실 운영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관리사무실,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규모 및 배치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및 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설계 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입주지원 및 하자보수 등)로 일정기간동안 운영될 수 있으며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기타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조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관리 등은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고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공사 중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용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BI,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1동 옥상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각동 EPS/TPS 및 훈룸 등에 설치되며, 옥외 안테나는 각 동 옥상 및 옥외 조경 구간에 설치됩니다. 또한 대한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동 가능하며, 이

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계획은 본 시공시 관계부서 협의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준공시 일괄처리 되며 현재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식재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에 설치된 세대창고는 세대별 사용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24층 및 3층과 4층사이의 피트는 피난대피공간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피트 하부에서 3층 지붕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므로 피난에 방해되는 어떠한 물건 및 적재물을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피난대 피공간은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통로에도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 24층 피난층 및 옥탑층에 인접한 세대는 피난층 및 옥탑층 소방점검등으로 인한 장비 운행 소음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 24층은 화재발생 시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며, 용도 외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출입통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단지 옥상에 위치해 있는 루프탑가든(옥상조경)에 인접한 세대는 입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일부 커튼월루 설치구간에는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유리마감면이 타 마감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유의사항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접(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장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며, 가스공급사의 가스공급압력에 따라 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커튼월루 설치구간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1동 어린이집 인근에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승하차공간이 설치예정이오니 모형과 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102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소음이나 업종에 따른 음식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동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위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가 필로티 내에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홀 공용 사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5층~지하7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가 설치 예정이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101동,102동 일부에 커튼월루 및 태양광패널이 설치 될 예정으로 인접동 일부세대에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와 인접한 101,102동 저층부 세대에는 당해시설 이용으로 인한 상가로부터의 소음, 미관저해 및 주방배기(악취) 및 보일러 연도 배기(그을음 및 냄새)등에 의해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 옥상난간대, 실외기 배치 등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상1층, 지상3층 주출입구(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LEV.홀 내부의 EPS/TPS,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세대는 보안등 및 경관조명 등(각종 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의 층변화세대의 공용 PD 및 AV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요금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단위세대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33층 108타입세대, 102동 24층 113타입세대 외부공간에 인접 세대는 피난동선을 위해 하양식 피난구가 외부에 설치되며, 하부층 세대의 하양식 피난구실로 연결 되며 이는 인허가 조건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4타입 102동 32층 세대, 108타입 101동 33층 세대, 113타입 102동 24~25층 세대, 180P타입 101동 35~36층 세대의 경우 외부공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출입문이 설치(108타입은 제외)되며, 외부공간에 면한 외부창에는 유리난간대가 미설치되오니 청약, 계약전 평면도 및 ISO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50mm로 시공됩니다. (허용오차 2% 이내)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44A의 발코니1,2 및 44B,59D,104타입의 발코니1은 건식 발코니로서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용 드레인 만 설치되며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의 발코니1에는 수전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B타입의 침실2,3은 입면다변화를 위한 돌출발코니로 인하여 층별 형태가 상이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36,44A,44B,59D,104,108,113,180P 세대는 실외기실에 59A,59B,59C,84A,84B 세대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침실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리, 드레스룸등 창이 없는 세대는 해당실 환기를 위해 전열교환기에서 연결되는 배기 디퓨져가 설치되어 환기 필요시 전열교환기 가동이 필요합니다.
- 44A, 44B, 104,108,180P 세대내 세탁실은 외기에 면해있지 않고, 해당실 환기를 위해 배기구가 설치되어 환기 필요시 환기설비 가동이 필요합니다.
- 44A, 44B 욕실 배기팬 가동시 세대내 세탁실과 함께 배기가 됩니다.
- 36,44A,44B 세대내 세탁실에는 건조기와 세탁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없으며, 2단 설치만 가능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히든도어는 59, 84타입에만 기본 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어 있는 아일랜드형 인덕션 및 후드의 경우 '유로모빌 SEI' 옵션 선택시 84A, 104타입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점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2018개정)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 예정입니다.(세대분전반 : 침실1, 통신단자함 : 5~9타입이하 신발장/84타입 이상 현관펜트리)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자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홀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창호에는 공기배출구(햇빛과 고온에 의한 표면 온도상승으로 창호내부 열축척 및 팽창에 의한 열변형 방지를 위한 배출구)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실 천정에 금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 될 때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 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등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 됩니다.
- 20층 이하 하향식 피난구실 외기창(고정창)은 소방관 진입창으로 계획되어져 있어 진입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발판이 설치되며, 외부 인식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적합한 표기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 주방TV(기본제공품목10")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창호 개폐, 가전제품, 주방용품, 주방간접등의 배치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의 위치를 임의로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및 평면에 따라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의 배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돌출발코니 상부세대의 경우 별도의 배수를 유출해서는 안되며, 배수 시 하부세대 및 외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민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돌출발코니의 상부는 악천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옥상공간 및 최상층에 설치된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설계된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님).

- 옥상공간 및 최상층에 설치된 외부공간 공용공간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세대 내 진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는 방식은 입주자회의로 결정에 따릅니다
- 옥상공간 및 최상층에 설치된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해당 동 이외의 입주자(단지 외부인_입주자동행 및 기타 등)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이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해당 사항으로 발생되는 보안문제, 안전사고, 소음, 진동, 누수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외부공간이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회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본 단지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세탁실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23.12월 기준 LG 오브제,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 건조기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80m³P, 113m³ 세대는 복층 세대로서 전기계량기는 세대당 1개소만 설치되므로 상/하층 분리 계량은 불가하고, 월패드는 상/하층부 거실에 각각 설치되어 해당 층에 대한 홈네트워크 제어만 가능하며 상호 연동은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세대평면에 따라 형태가 상이합니다. (스윙타입 : 59A, 59C, 59D, 104 슬라이딩타입 : 59B, 84A, 84B, 108, 113, 180P)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디자인 패널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 시 입주 후 고객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와 배관이 제공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디자인월 및 디자인패널 마감은 자재특성 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디자인월 및 디자인패널 마감은 평형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디자인 선택은 불가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타입이상 기본제공] 디자인월 및 디자인패널 마감은 자재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팬은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설치세대의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D, 84A, 104m³타입은 전동 빨래건조대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조명 및 스위치가 삭제되고, 전동 빨래건조대의 조명 및 리모콘으로 대체되며 리모컨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아니하고 입주시 지급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는 천정 내부 시설물을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해당 실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시행인가 도서상에 설계된 84B타입 주방의 키큰장 가구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아일랜드 장으로 변경되어 공급될 예정이오니, 청약/계약전에 홈페이지, 카탈로그등의 평면도/ISO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 хр减免실 등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헨터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주차차단기는 각 시설별 주차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주택용 주차 구역 내 주차하여야 하며, 공공시설과 판매시설의 주차 구역내 주차 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 내 주차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상가를 위한 창고 공간이 시공되며(선반, 캐비닛 등의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체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창고를 이용할 경우 보관물품이 습기등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창고는 별도 마감이 없으며, 창고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헌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에서 직접 진입하는 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높이 및 램프높이와 지하3층 통행로 중 택배차 진입구간은 2.7M 적용하였습니다. 단, 그 외 지하주차장의 램프 진입 높이와 주차통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진입층(지하3층)을 제외한 지하4~7층 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2.3m입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훌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 없이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일부시설에는 EHP가 적용됩니다. 지열기계실 운영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3~6호라인 지하1층의 세대창고(선반, 캐비닛 등의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는 별도 마감이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협의체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창고를 이용할 경우 보관물품이 습기 등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은 예시이며, 시공시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상수도, 지역난방, 도시가스, 소방시설물, 전기, 통신시설물등 건물 유지 시설물의 관리 및 범위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혼재하여 시공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 결정시 상호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일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이 공동주택 공용부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BI),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돋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CG이미지(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주민회의실/멀티룸, 컨시어지라운지)의 테이블/의자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액자,화분 등), 일부 조명(벽부등, 팬던트)는 본 사업 시행자의 제공품목으로 향후 품목의 디자인,종류,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역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것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은 최초 계약자 대상(전매 매수 계약자는 제외)으로 양양 더앤리조트 멤버쉽 혜택(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을 제공하고 더앤리조트 멤버쉽 혜택의 경우 계약세대의 전용면적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자세한 혜택내용은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입주민 대상의 컨시어지 서비스업체인 'SLP'와 운영협약하여 입주민 대상의 '비서 서비스'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비서 서비스'이외의 기타 컨시어지 서비스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세계푸드와 협약하여 단지 내 근생시설에 신세계푸드 조식서비스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조식서비스 비용은 입주민 중 조식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내 삼성스토어, 스타벅스 입점 계획은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과 입점예정 업체와의 입점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광고홍보물(홈페이지, 카탈로그, 온라인기사 등) 상에 표현된 "AI/IoT, 조식서비스, 피트니스/사우나/스크린골프 시설운영, SLP 컨시어지 서비스, AI Baggage로봇 배치"는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각 해당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협의 상황에 따라 운영개시일, 운영업체,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홈페이지, 카탈로그, 보도기사 등의 광고홍보물에 설명된 '발렛주차 서비스'는 본 사업의 시행위탁사인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 이 '발렛주차 서비스' 운영사와 별도 협약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전용 주차면을 활용하여 입주후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발렛주차 서비스' 비용은 본 단지 입주민 중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서비스는 시행위탁사와 운영사간의 약정 운영 기간 1년 이후 운영 종료될 수 있으며 약정 기간 이후의 서비스 운영 유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같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분양자",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음.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그란츠리버파크'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단지이며, 본 단지 계약자 또는 입주자대표는 계약이후 시공사 DL이앤씨(주)의 브랜드인 '아크로', 'e편한세상'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컬러, 사이니지 등 브랜드 고유 자산 일체를 본 단지에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 문의문의 : 1533-7677

■ 인터넷 홈페이지 : www.glanzlife.co.kr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견본주택 홈페이지(www.glanzlife.co.kr)를 운영합니다. 단, 견본주택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에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